발간등록번호
2026-05호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 보육교직원 권리보호와 영유아 생활지도

존중받는 보육, 보호받는 교사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 보육교직원 권리보호와 영유아 생활지도

존중받는 보육, 보호받는 교사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권리보호와 영유아 생활지도
: 존중받는 보육, 보호받는 교사」 제작은
2026년 3월 기준 적용되는 법에 근거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경기도 보육교직원
# 고충처리창구 운영 안내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보육교직원 고충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보육교직원 고충처리창구를 통한 상담 지원 내용

- 보육교직원의 근무와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안내
-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겪는 어려움, 부당한 대우 등 전반적인 내용 상담
  (인사·노무상담, 보육교직원 권리침해 상담, 심리상담 등)

**대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기타 보육교직원 등)

**상담비용** 경기도 내 보육교직원이라면 무료 상담

**상담시간** 평일(월~금요일) 09:00~18: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상담유형** 유선, 채팅, 비대면(줌), 대면, 서면 상담

**상담방법**

| 상담신청 | 상담접수 | 상담진행 | 상담종료 | 사후모니터링 |
|---|---|---|---|---|
| 상담 신청 QR에 접속하여 상담 신청 | 담당자가 확인 후 상담 시간 조율하여 상담 일정 안내 | 전문가(노무사, 변호사)와 고충 상담 진행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전문가 연계 | 상담 진행 후 만족도 조사 평가 | 상담 종료 후 모니터링 및 심리상담 연계 서비스 진행 |

## 상담내용

### 노무사를 통한 상담 지원 내용

-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와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위한 인사·노무 법률 상담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임금, 휴게시간, 휴가, 모성보호, 가족돌봄, 해고 등)
- 직장내 괴롭힘 등 보육교직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관련 법률 상담

### 변호사를 통한 상담 지원 내용

- 부모민원(반복적 민원 제기 행위) 등 보육교직원 권리 침해 관련 법률 상담
- 아동학대신고(무죄판정 근거)로 인한 보육교직원의 어려움 관련 법률 상담
-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법률 상담
  (폭행·상해, 모욕·명예훼손, 협박·강요, 업무방해, 불법정보 유통행위, 무단촬영·녹음·배포, 무고, 손괴, 성희롱 및 성폭력)
- 기타 보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법률 상담
  (부당업무 강요행위, 보육활동 부당 간섭행위, 정당한 영유아 생활지도 방해 행위 등)

### 심리 상담가를 통한 상담 지원 내용

- 보육교직원의 권리침해 건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 진로 고민, 관계 어려움(원아, 부모, 동료, 상사 등), 업무 관련, 개인사 등 개별 상담 및 집단상담
- 보육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 경기도 내 보육교직원 고충 상담 신청방법

**상담신청서 작성**

**네이버채팅 문의**

**보육교직원 고충처리창구 문의**

031-8019-9772(직통번호)

031-258-1485(내선 3)

# CONTENTS


## I

### 목적 및 구성내용

1. 목적 10
2. 구성내용 11

## II

###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및 보호자, 영유아의 책무

1. 영유아의 권리 14
2.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책무 15
3. 보호자의 책무 16
4. 영유아 생활지도 시 원장과 교사 및 보호자, 영유아의 책무 17

## III

### 영유아 생활지도

1. 영유아 생활지도 20
2. 영유아 생활지도의 범위 22
3. 영유아 생활지도의 방식 24
4. 취약보육 영유아의 생활지도 33
5. 영유아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35

## IV

###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침해행위 유형과 대응방안

1.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40
2.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43
3.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방안 72
4. 반복적 민원 제기 행위 시 대응방안 75
5. 아동학대 신고 시 대응방안 77
6.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역할 81

## 부록

### 보육교직원 권리 관련 법령

1.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86
2.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92

# I

# 목적 및 구성내용

1. 목적

2. 구성내용

# 1 목적

교육부는 보육환경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보육활동 보호 대책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국가 차원에서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하였으며,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교직원이 자긍심을 갖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함

경기도여성가족재단(2025)의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현황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보육 현장은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의 특성상 낮은 처우로 인해 보육교직원의 이직과 사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 보육활동 침해행위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이와 같은 정책적 방향에 따라,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보육환경 조성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본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보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침해행위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절차를 안내하고자 함

아울러 「보육교직원 권리보호와 영유아 생활지도 : 존중받는 보육, 보호받는 교사」 권리보호사례집 제작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보육활동 침해행위 대응에 대한 실천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2 구성내용

**경기도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운영 안내**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와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위하여 고충상담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안내함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법령 및 정보 안내**

교육부의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권리보호 법령 및 정보 안내**

영유아보육법 및 형법 등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침해행위 유형과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침해유형별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침해행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절차 안내**

반복적인 민원 제기 행위 및 아동학대 신고(무죄 판정 근거) 등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현장에서 적절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

# Ⅱ

#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및 보호자, 영유아의 책무


1. 영유아의 권리
2.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책무
3. 보호자의 책무
4. 영유아 생활지도 시 원장과 교사 및 보호자, 영유아의 책무

# 1 영유아의 권리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의미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서비스를 받는 모든 아동을 포함한다. 영유아는 안전하고 발달에 적합한 환경에서 보육 받을 권리가 있으며, 폭력,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격체로부터 존중받아야 한다. 영유아는 원장 및 교사의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이에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 보육 이념과 영유아의 권리

**영유아보육법 제3조(보육 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개정 2011. 8. 4.>

[전문개정 2007. 10. 17.]

## 아동의 권리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 개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개정 2025. 4. 1.>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2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책무

원장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총괄하고 민원처리 및 행정 전반을 관리하며, 보육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영유아 보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한다.

##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직무

**영유아보육법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 · 감독하고 영유아를 보육한다. <개정 2011. 6. 7., 2024. 2. 6.>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6. 7.>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일상생활 지원, 발달 특성에 맞는 보육 활동의 계획과 실행, 안전관리, 보호자 상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생활지도를 직접 수행하는 주체로서, 일상생활 전반에서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 보육교직원의 책무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 ·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14.>

②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 · 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14.>

[본조신설 2015. 5. 18.]

# 3 보호자의 책무

보호자는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보육활동을 지원해야 하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방해하거나 보육활동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보호자는 어린이집 규칙과 운영 방침을 존중해야 하며, 의견을 제시할 때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보호자는 어린이집의 생활지도 방침과 내용을 이해하고, 영유아의 생활지도가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협력하여야 한다.

### 보호자의 의무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보육교직원 또는 다른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18조의5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보육 활동에 관한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보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6.]

### 보호자의 책무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3. 27.>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 4 영유아 생활지도 시 원장과 교사 및 보호자, 영유아의 책무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를 정당하게 지도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원장과 교사는 안전한 어린이집 문화조성과 보육활동을 위하여 영유아와 보호자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원장과 교사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수행할 권리를 가지며, 영유아의 기본권 침해나 보호자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고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 2. 6.]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및 보호자, 영유아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및 보호자, 영유아의 책무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3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및 보호자, 영유아의 책무)**

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보호자, 영유아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생활지도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다른 영유아의 보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 및 보호자와 교사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행정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④ 영유아와 보호자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⑤ 보호자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를 존중하여 보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 본 내용은 ‘교육부·한국보육진흥원(2025).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를 바탕으로 구성·제작하였습니다.

# Ⅲ

# 영유아 생활지도


1. 영유아 생활지도
2. 영유아 생활지도의 범위
3. 영유아 생활지도의 방식
4. 취약보육 영유아의 생활지도
5. 영유아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보육교직원 권리보호와 영유아 생활지도**

존중받는 보육, 보호받는 교사

# 1 영유아 생활지도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에 따른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에게 부여한 영유아 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린이집 생활지도는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적 과정이므로 원장과 교사, 보호자(학부모)가 상호 협력하여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해야 하며, 영유아도 생활지도의 대상이자 주체로서 스스로 참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영유아 생활지도 정의**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4. “영유아 생활지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보육활동과정에서 영유아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보상 등의 지도 행위를 말한다.

**영유아 생활지도 분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3(영유아생활지도)**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법 제18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 · 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영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영유아의 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8. 6.]

[제20조의12에서 이동 <2026. 3. 24.>]

*학업 : 법령상 ‘학업’이라는 용어는 영유아에게 교과 중심 지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와 일상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배움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영유아 생활지도 시 금지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 양육 ·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2 영유아 생활지도의 범위

## 영유아 생활지도 범위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4조(생활지도의 범위)**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1.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영유아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정당한 보육 활동과 다른 영유아의 보육을 받을 권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어린이집의 반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 · 사용
5.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6. 언어 사용, 비언어적 상호작용 등 모든 의사소통 행위
7. 영유아 간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8. 취약보육 영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9. 그 밖에 생활지도에 관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 영유아 생활지도 범위(예시)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영유아가 놀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놀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다른 영유아의 놀이를 방해하는 행위
- 식사시간에 편식이 심하거나, 손 씻기, 양치 등 위생 습관 형성이 어렵거나, 정리정돈 등 자기관리 행동을 회피하는 행위

### 영유아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영유아나 교사를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공격적인 행위
- 옥외시설물, 교실, 복도, 계단 등 어린이집 시설을 위험하게 이용하는 행위
- 위험한 물건(칼, 가위)을 만지려는 행위

### 어린이집의 반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 · 사용

- 칼 가위, 장난감 칼, 공구, 화학약품 등 영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등
- 교사의 허락없이 전자기기 등을 활용하여 보육활동을 녹음·녹화하는 행위

###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정당한 보육 활동과 다른 영유아의 보육을 받을 권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

- 놀이, 기본생활습관(급식, 낮잠) 등 일상적인 보육활동 속에서 다른 영유아의 휴식,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놀이, 일상생활 활동 속에서 원장 및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지침을 따르지 않아 보육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올바르지 않은 식사태도, 편식하는 행위 등
- 공공장소에서 예의를 지키지 않고 돌아다니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없이 가져가거나 훼손하는 행위

### 언어 사용, 비언어적 상호작용 등 모든 의사소통 행위

- 욕설, 폭언, 속어, 유행어 사용이나 거짓말을 반복하는 행위
- 타인을 놀리고 조롱하며 타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
- 자신의 감정상태를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행위

### 영유아 간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 갈등 발생 시 밀치거나 때리며 폭력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행위
- 영유아를 놀이나 활동에서 의도적으로 따돌리거나 위협하는 행위
- 놀이 중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고자질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 취약보육 영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장애아, 다문화가족 등 관련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 취약보육 영유아에 대한 이해 를 높이는 지도행위
- 장애를 가진 영유아를 놀리거나 의도적으로 놀이에서 배제하는 차별적 행위 중재

### 그 밖에 생활지도에 관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 지역적 특성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어 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시설 이용 수칙, 출석 관련 운영 수칙 등 세부 규칙을 규정

# 3 영유아 생활지도의 방식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에 따라 “영유아 생활지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보육활동과정에서 영유아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보상 등의 지도 행위를 말한다.

생활지도의 방식 : 조언

## 가. 조언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5조(조언)**

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영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영유아의 사생활에 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에게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조언’ 지도 방법 및 유의사항

- 영유아의 발달 수준 및 개인차를 고려하여 긍정적 언어로 안내한다.
- 조언하기 전, 영유아의 상황과 원인을 관찰하고 적절한 해결 방향을 설정한다.
- 조언은 지적이나 비난이 아닌 지원 행위임을 명확히 한다.
- 교사의 감정이 개입된 언어나 강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보호자의 양육방식을 부정하거나 비교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생활지도의 방식 : 상담

## 나. 상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 또는 보호자와 소통하여 영유아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고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모든 의사소통 활동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6조(상담)**

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보호자 또는 영유아는 영유아의 문제를 해결이나 추가 지원을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보육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 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 내용은 해당 영유아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및 대상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보호자 등의 폭언 ·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른 보육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상담’ 지도 방법 및 유의사항

- ‘상담’ 지도의 목적은 영유아의 문제 상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가정과 어린이집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지원 방향을 마련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정적 성장과 긍정적 행동 변화를 돕는데 있다.
- 상담은 반복되거나 원인 파악이 필요한 사안을 중심으로, 보호자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여야 한다.
- 상담 결과는 상담 기록지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연계, 추가 상담, 훈육 등의 후속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상담 절차(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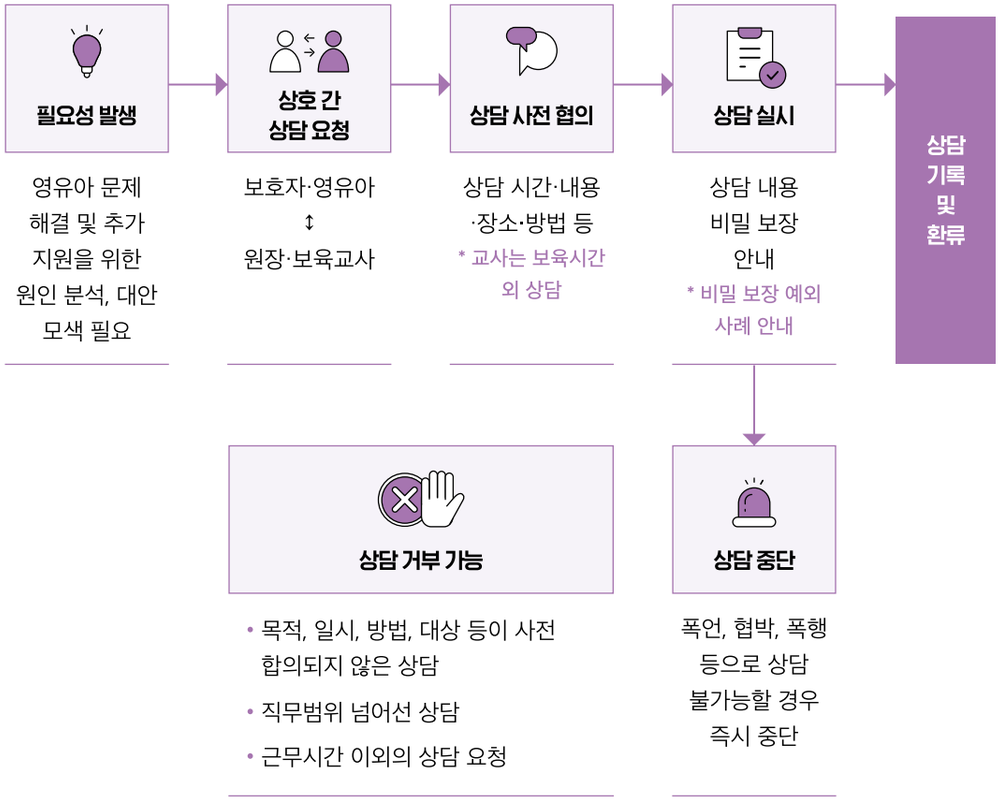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2025).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2025~2029년).



생활지도의 방식 : 주의

## 다. 주의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 또는 보호자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의 위반 가능성 등 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7조(주의)**

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의 행동이 어린이집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영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반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영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주의를 주었음에도 영유아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영유아의 행동으로 보육 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8조에 따른 훈육 ·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가 주의를 주었음에도 영유아가 이를 무시하여 인적 ·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장과 보육교사는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주의’ 지도 방법 및 유의사항

- 주의는 영유아 또는 보호자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등을 경고하는 지도 행위로, 영유아의 반복적이거나 즉각적인 행동 조절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시한다.
-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게 간결하고 단호하되, 비난이 아닌 안내의 어조로 전달한다.
- 주의 시 공개적 질책보다는 개별적으로 전달하며, 타 영유아 앞에서 부정적 낙인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 동일한 행동이 반복될 경우, 주의 내용을 누적 기록하여 후속 상담이나 훈육의 근거로 활용한다.

## 라. 훈육·훈계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영유아의 행동을 중재하거나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

**생활지도의 방식 : 훈육·훈계**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8조(훈육·훈계)**

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제5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7조에 따른 주의로 영유아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 · 훈계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가 법령에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영유아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른 보육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사는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영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다른 법령에 따라 영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교사가 반 분위기를 저해할 것으로 판단하는 물품
4. 그 밖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⑥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른 영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영유아에게 질병이 생기거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귀가를 요청할 수 있다.

**'훈육·훈계'의 생활지도 방식으로는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귀가조치 등이 있다.**

### 1) 지시

교사가 영유아에게 명확한 행동 기준이나 수행 방법을 제시하여, 올바른 행동 방향을 안내하는 지도 행위

#### '지시' 지도 방법 및 유의사항

- 지시는 문제 행동이 발생하기 이전이나, 발생 직후 초기 단계에서 활용되며, 규칙·약속·순서 등의 행동 기준을 알려주는 예방적 지도 방식이다.
- 지시를 할 때는 영유아의 발달 수준, 언어 이해력,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한다.
- 지시의 내용은 긍정적인 표현("이렇게 하자")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부정적 명령("하지마")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해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각자료(예, 사진, 그림, 손짓 등)를 활용해 행동을 구체화한다.

### 2) 제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의 부적절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즉시 중단시키기 위해, 언어적·비언어적 신호 또는 신체적 개입(안전 범위 내)을 통해 행동을 멈추게 하고 안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지도행위

#### '제지' 지도 방법 및 유의사항

- 제지는 지시 이후에도 행동이 개선되지 않거나,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실시한다.
- 제지 시에는 우선 '멈춰요', '위험해요'와 같이 짧고 단호한 언어로 즉시 중단을 요청하는 언어적 제지를 우선 실시한다. 다만, 영유아가 스스로 통제가 어렵거나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영유아의 손을 부드럽게 잡거나 행동을 일시적으로 막는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물리적 제지를 실시한다.
- 제지 후에는 반드시 행동의 이유를 함께 탐색하여 영유아가 '왜 멈춰야 했는지'를 이해하도록 지원한다.

### 3) 물품 분리보관

교사가 영유아가 사용하는 물건이나 놀잇감이 부적절한 행동을 유발하거나, 다른 영유아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을 때, 교사가 이를 일시적으로 분리·보관하여 상황을 안정시키는 지도 행위

#### ⚠ '물품 분리보관' 지도 방법 및 유의사항

- 물품 분리보관은 처벌이 아닌 '상황 조절을 위한 안전 조치'이며, 영유아에게 부정적 감정을 주지 않도록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 물품 분리보관 지도 시, 물건 자체가 아닌 행동의 부적절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예, 이 장난감이 위험해서 잠시 치워둘게요)
- 분리보관 후 영유아의 감정이 안정되면 즉시 재사용 기회를 제공하여 회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4) 귀가조치

영유아의 질병이나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다른 영유아와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원장 또는 교사가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귀가를 요청하는 지도 행위

#### ⚠ '귀가조치' 지도 방법 및 유의사항

- 귀가조치는 처벌이나 배제가 아닌 영유아와 교직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생활지도임을 교사와 보호자 모두 인식한다.
- 귀가조치는 영유아의 건강 상태(발열, 구토, 발진 등)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하며, 보호자에게 구체적인 증상과 귀가 사유를 차분한 어조로 설명하도록 한다.
- 발병 시각, 증상, 보호자 연락 시간, 귀가 시간 등을 보육일지 또는 생활지도일지에 기록한다.
- 귀가 후 재등원 시에는 의사의 진단서, 보호자 확인서 등을 근거로 등원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 감염병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 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교직원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 8. 4., 2020. 12. 29., 2023. 12. 26.>

1.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 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생활지도의 방식 : 보상

### 마. 보상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 · 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9조(보상)**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 ‘보상’ 지도 방법 및 유의사항

- ‘보상’ 지도의 목적은 영유아가 칭찬을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그 경험을 통해 내적 동기(스스로 행동하려는 의지)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 보상은 즉각적이고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효과적이다.
- 물질적 보상(스티커, 선물)보다는 사회적 보상(칭찬, 인정, 신뢰 표현 등)을 중심으로 실시 한다.
- 영유아의 모든 행동을 칭찬하기보다, 의미있는 행동 변화나 시도에만 제공하여 그 가치가 유지되도록 한다.

# 4 취약보육 영유아의 생활지도

취약보육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만3세 미만의 영아, 장애아, 다문화가족 등을 말하며, 일반 영유아보다 발달수준과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 생활지도가 필요한 대상을 의미한다.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영유아보육법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 · 장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전문개정 2007. 10. 17.]

취약보육의 종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취약보육의 종류)**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은 다음 각 호의 보육을 포함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1.>

1. 영아 보육: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장애아 보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 다문화아동 보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전문개정 2009. 7. 3.]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이러한 취약보육 대상에 대해 원장과 교사에게 특별히 노력해야 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담당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취약보육 영유아를 보육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교사 중심의 일방적 지도가 아닌 보호자와 상호 협의에 기반한 개별화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취약보육 영유아의 생활지도**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0조**
**(취약보육 영유아의 생활지도)**

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만 3세 미만의 영아,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이하 '장애아'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지도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원장(이하 '취약보육 어린이집 원장'이라 한다.) 은 취약보육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취약보육 관련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취약보육 어린이집 원장은 취약보육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을 편성하고, 취약보육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와 다른 보육교직원이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경우 보호자와 상호 협의하여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을 정할 수 있다.



# 5 영유아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의도적으로 이를 방해하거나 반복적으로 불응할 경우, 이를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행위로 판단하여 원장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원장은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로 인한 보육활동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보육교직원의 회복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유아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1조**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보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제18조의3에 따라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조치할 수 있다.

보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보육교직원의 권리침해 발생 시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교직원 고충처리창구」에서 변호사를 통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심리상담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 지원 및 스트레스 완화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 보호자의 이의제기

보호자는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생활지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어린이집 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원장은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기된 이의의 내용을 검토하고 해당 교사 및 관련자와의 면담, 기록 검토 등을 통해 해당 생활지도의 상황, 내용, 방식,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답변한다.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이의제기)**

① 보호자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 이의제기 처리 절차(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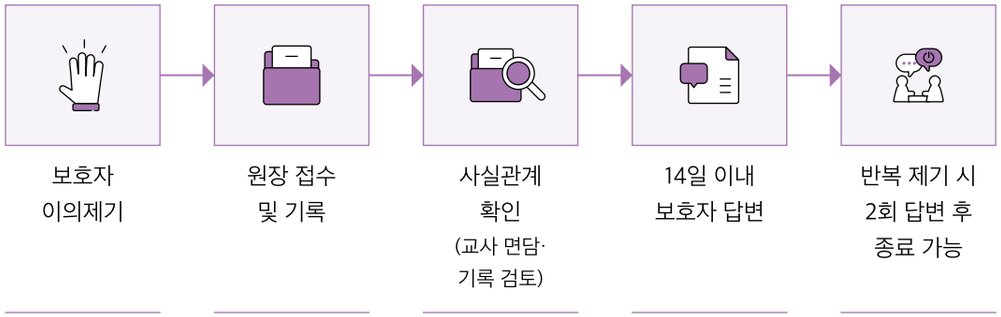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2025).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 IV

#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침해행위 유형과 대응방안


1.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2.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3.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방안
4. 반복적 민원 제기 행위 시 대응방안
5. 아동학대 신고 시 대응방안
6.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역할

# 1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상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보육전문가로서,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과도한 요구로 보육활동이 제한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전문적 보육 활동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보육활동** 어린이집 보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라 원장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영유아 보육, 생활지도 등 모든 활동

**보육활동 침해행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행위

**보육활동 침해 행위자**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 등으로서 보호자는 영유아의 학부모, 학부모의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이 포함

**보육활동 침해 행위의 대상** 보육활동 침해 행위의 대상은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보육교사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3(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보호)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3(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1.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예방
2.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관리 및 보육교직원의 보호조치
3.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육 활동 보호 관련 법률, 노무 및 심리 · 정서 관련 상담
5.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2. 6.]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보육활동 보호위원회의 설치 · 운영**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구성해야하며, 각 시 · 도는 시 · 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4(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 · 운영)**

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둔다.

1.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2. 제2항에 따른 시 · 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 도에 시 · 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둔다.

1. 보육교직원 보육 활동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
2.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본조신설 2024. 2. 6.]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 · 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민원 · 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내 ·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해당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 활동과 관련하여 보육교직원에 대한 폭행 · 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 처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3. 24.]

# 2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폭행·상해, 모욕·명예훼손, 협박·강요, 업무방해, 불법정보 유통행위, 무단촬영·녹음·배포, 무고, 손괴, 성희롱 및 성폭력범죄, 기타 보육활동 침해행위 (반복적 민원제기 행위, 부당업무 강요행위, 보육활동 부당간섭행위,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행위)

**폭행·상해**

**폭행·상해 행위란?**

보육교직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신체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정상적인 신체의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

**폭행·상해 예시**

- 교사에게 도구를 이용하여 타박상이나 골절상을 입히는 경우, 교사의 멱살을 잡거나 교사의 뺨을 때리는 경우
- 지속적인 폭언과 고성으로 인해 교사가 수면장애나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을 겪게 된 경우
- 교사와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팔이나 다리를 휘둘러 때리려고 하는 경우

**폭행·상해 현장사례**

- 아동학대를 의심한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난입하여 교사의 어깨를 손, 어깨, 몸 등으로 밀친 경우
- 보호자가 교실에 있는 의자를 들어 교사를 향해 던졌으나 의자가 교사를 살짝 비켜간 경우

**폭행·상해 관련 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형법 제260조(폭행)

## 사례로 알아보는 Q&A

**Q** 어린이집 원아의 부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찾아와서 고성과 함께 삿대질을 반복적으로 하는데, 너무 위협적이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사를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으니 피하기만 해야 할까요?

**A** 법률적으로 폭행의 정의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삿대질도 단순히 항의를 표현하는 제스처를 넘어서 교사에게 근접한 상태에서 얼굴을 향해 고성과 함께 삿대질을 반복하여 누가 봐도 위협적이라면 직접적 접촉이 없어도 폭행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8 외 다수). 그러므로 교사와 근접한 상태에서 고성, 반복적 삿대질은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원의 보호자 한 분은 전화로만 화를 엄청 내십니다. 소리를 너무 질러서 귀가 먹먹할 지경이고 그 보호자와 통화를 끝내고 나면 진이 다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한동안 귀가 잘 안 들리기까지 합니다. 제 나름으로는 화가 점점 커진다 싶으면 수화기를 멀리 떼서 스스로를 보호하긴 하는데, 중간에 맞장구를 쳐주지 않으면 더 화를 내시니 전화를 끊기도 어렵습니다. 정말 참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상해의 법률적 정의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통화 이후 한동안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라면 완전성이 훼손된 상태로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에 해당하며 청각기능 저하를 상해로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662). 다만, 상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전화 통화를 녹음하여 객관적으로 귀가 아플만한 고성을 상대방이 지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바로 병원에 가서 관련 검사를 통해 “감각신경성 난청”등의 진단을 받아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육교직원을 보호하는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해 보호자가 고성을 내기 시작하면 1회 경고하고 그 후에도 계속되면 전화를 끊는다는 내용을 미리 보호자들에게 모두 고지하여 교사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모욕·명예훼손 행위란?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 모욕·명예훼손 예시

- 보호자가 다른 부모들에게 교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
- 담임교사에게 불만을 품은 보호자가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 담임교사의 가정사를 유포한 경우

### 모욕·명예훼손 현장사례

- 다른 부모들에게 ‘OOO교사가 전에 있던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있어서 해고를 당했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 다른 학부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교사에게 “선생님 보조교사 맞죠?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은 있으세요?”라고 묻는 경우

### 모욕·명예훼손 관련 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사례로 알아보는 Q&A

**Q** 보호자가 우연히 교사의 SNS 계정을 알게 된 후, 교사에게 SNS에서 봤다면서 "이번에 남자친구랑 해외여행 다녀오셨나봐요"와 같은 교사의 개인적 생활을 언급하여 화들짝 놀랐습니다. 해당 보호자가 다른 보호자에게 교사에 대해 어떤 말을 할지 너무 걱정됩니다.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A** 해당 발언은 분명 교사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 비매너적 행위인 것은 사실이나 위 발언을 교사와 단둘이 있을 때 하였다면 형사적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모욕 및 명예훼손은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데,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이 없다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발언을 한 보호자가 다른 보호자로부터 들은 것 이라면 이미 전파가 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문제 되는 발언의 내용에 따라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보호자가 교사에게 본인의 자녀만 특별히 챙겨달라는 요구를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교사가 웃으며 "네, 반 아이들 모두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걱정마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보호자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 후로 다른 보호자를 통해 아파트 단지 인터넷 카페에 저에 대해 허무맹랑한 소문이 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할 방법이 없을까요?

**A** 우선 인터넷에 그러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해야 합니다. 요즘 입주민 카페는 입주민 인증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고소를 통해서 발언자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의심하는 보호자가 그 발언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회적 가치를 저해하는 발언 중 발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명예훼손이고 아닌 것은 모욕입니다. 입주민 카페에 올라오는 글 중 상당수는 사실과 가치판단이 뒤섞여 모욕과 명예훼손 행위가 혼재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의 작성자를 고소할 때는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협박·강요

### 협박·강요 행위란?

보육교직원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거나 보육교직원의 법적 의무나 직무 범위가 아닌 일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협박·강요 예시

교사에게 공포심을 줄 목적으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통보하거나, 교사의 업무와 상관없는 무리한 업무를 요구하는 경우

### 협박·강요 현장사례

- 학부모가 어린이집을 찾아와 교사에게 다짜고짜 '그만두게 하겠다', '신고해서 책임지게 하겠다', '인터넷에 다 퍼뜨리겠다' 라고 해서 실제 두려움을 느낀 경우
- 어린이집 원장에게 무릎 꿇고 사과할 것과 공개사과문을 올릴 것을 요구하며 '선생님을 해고했으면 상황이 조금 나아졌을 수도 있다, 머리를 조아리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경우

### 협박·강요 관련 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형법 제324조(강요)

## 사례로 알아보는 Q&A

**Q** 반에 말이 늦어서인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친구를 밀치는 A아동이 있습니다. A아동의 보호자는 놀이치료 등도 적극적으로 받고 상황을 말씀드리며 늘 피해 아이 보호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진심으로 사죄를 표하십니다. 교사도 A아동이 다른 아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정도로 강하게 밀치는 것은 아닌 데다 발달 단계상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기에 위험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밀쳐진 B아동의 보호자가 너무나 강경하게 A아동의 퇴원 조치와 함께 '해당 아이가 "습관적 폭력성"을 가진 아이이며 그로 인해 여러 아이가 "심한 상해"를 입었다'는 과장된 내용으로 원 전체 학부모에게 공지할 것을 요구하며 자신의 요구를 몇일 내로 따르지 않을 시 입주민 인터넷 카페를 통해 공론화하겠다고 합니다. 피해 아동 부모의 요구라고 해서 모두 수용해야 하나요?

**A** 영유아보육법상 원에서 B아동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퇴원시킬 권한이 없으며 피해 아동 측 요구라고 따라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 아동 부모가 A아동을 퇴원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원에게 법적 의무가 없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형법상 "강요"에 해당합니다.

물론 원에서 발생한 사건 중 재발 방지가 중요한 것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논의한 뒤 재발 방지 방안을 공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재발 방지와 같은 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교사가 판단하기에 사실에서 벗어난 과장된 내용을 공지하면 해당 아동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주민 인터넷 카페에 공론화하겠다는 발언은 맘카페의 지역사회 파급력과 지금까지 피해 아동 부모의 태도를 볼 때 원장과 교사는 그 발언만으로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바, 형법상 협박에 해당합니다.



## 사례로 알아보는 Q&A

**Q** 바깥 놀이를 한 후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아이 몸에 많은 멍자국을 발견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습니다. 바로 시청과 경찰에 사건이 인계되었고 가해자는 아동의 아버지였음이 밝혀져 아이는 외할머니 집으로 격리되었으며 아버지는 직장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아이의 어머니가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바람에 아이가 외할머니 집에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니 선생님의 신고행위가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라며 맘카페, 소송, 고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복수할 것이라는 문자 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A** 어린이집 교사는 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되어야 하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신고한 점이 명백해져 신고자 보호가 현실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교사가 학대를 신고한 것이 불법이 아닌 이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교사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없으며 당연히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맘카페 공유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복수할 것"이라는 멘트 자체로 교사는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명백히 협박에 해당하며 이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은 가중처벌 사유입니다.

### 업무방해 행위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업무방해 예시

보호자가 보육활동 중인 보육실에서 위력을 행사하며 큰소리로 허위사실을 말하고 교사를 밀쳐서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 업무방해 현장사례

- 보호자가 보육활동 중인 보육실로 들어와 큰소리를 지르며 허위사실을 말하고 교사를 밀쳐서 보육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 보호자가 체격이 크고 몸에 문신한 사람들을 대동하고 어린이집 사무실로 와서 교사를 불러오라고 하는 경우

### 업무방해 관련 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 사례로 알아보는 Q&A

**Q** 하원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원아 중 한 명은 가끔씩 부모가 원할 때만 차량으로 하원하는데, 얼마 전 원아의 부모가 하원 시간에 임박하여 차량 이용을 알려왔습니다. 그로 인해 아이가 그 차를 타지 못하고 한 시간 뒤에 출발하는 차로 하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보호자는 그 사실에 굉장히 분노하시며 다음 날 원을 찾아와서 고성을 지르셨고, 그 바람에 낮잠 중인 아이들이 울면서 깨어나는 등 한동안 원이 한동안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A** 고성을 지르는 행위는 위력으로 볼 수 있고, 아이들이 놀라서 우는 등의 상황은 분명히 어린이집의 안전한 보육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여, 원에서 생활하는 영유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간담회에서 보호자들이 저(교사)에 대해 단체로 사실과 다른 일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3월 적응기간부터 교사의 말투, 표정이 너무 무서워 보이고 아이들에게 친절하지 않고 상냥하지 않았다고 하시며 특히 아직 어린이집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아이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등의 언어적 대응이 없이 그냥 지켜보기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애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였으며, 그 결과 애착관계 형성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보호자들이 단체로 제가 불친절하다고 불만을 표하니 상당한 혼란과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간담회 때 받은 정신적 충격과 압박으로 교사로서 업무 수행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A**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업무방해의 모습 중에 단체로 몰려와서 항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원은 한 사람이 항의하는 것과 달리 단체가 몰려오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가진다고 판단합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일반 서비스직보다 높은 수준의 상냥함이나 친절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간담회에서 다수의 학부모들이 선생님의 상냥함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수준보다 낮다고 말한 것 자체가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부모들은 간담회의 취지에 맞게 평소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수 있고, 불법적인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에서는 교사들이 감정노동으로 업무상 질병 등을 청구할 수도 있는점 고려하여 간담회를 진행하더라도 원장과 학부모만 참석하여 그 안에서 나온 다양한 발언을 원장이 당사자인 교사에게 정제하여 전달하는 형태를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적응기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언어적·행동적 상호작용에 대하여 부모님들께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불법정보 유통행위

### 불법정보 유통행위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육교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불법정보 유통행위 예시

교사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와 전화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맘카페 게시판에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차별하는 등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

### 불법정보 유통행위 현장사례

- 인터넷 맘카페에 'OOO 어린이집 OO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작성한 경우
- 교사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 어린이집은 주기적으로 전문업체를 통해 청소와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호자가 아이의 피부질환이 어린이집의 지저분한 놀이환경 때문이라며 인터넷 카페에 '어린이집과 담임교사를 특정하며, 질병을 유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 불법정보 유통행위 관련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사례로 알아보는 Q&A

**Q** 원 행사가 있어서 부모님들이 오셨는데, 행사가 끝난 후 교사들이 특정 보호자에게서 방금 담배를 피고 온 듯 냄새가 너무 많이 났다고 저(원장)에게 말하였습니다. 원장인 저는 앞에서 행사를 진행하느라 뒤쪽에 계신 보호자의 담배 냄새를 알지 못하였고, 만약 행사 직전 담배를 피고 온 것이라면 아이들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도 걱정되었습니다. 마침 운영위원회가 있어 운영위원에게 해당 보호자가 흡연하시는 분인지 여쭤보았더니, 운영위원도 해당 보호자의 흡연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저는 원장으로 해당 보호자에게 행사 직전 흡연은 조심해 달라고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연락을 드렸는데, 자신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운영위원에게 확인하였다고 길길이 날뛰며 입주민 인터넷 카페에 "원의 교사와 원장이 부모들 뒷담화하는 곳"이라는 내용으로 비방하였습니다.

**A**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명예훼손 글은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우리가 인터넷에 올라온 후기를 보고 맛집을 고르듯이,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올린 후기라면 처벌대상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허위라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 처벌 대상입니다.

질문 내용을 종합할 때 원장이나 교사가 강한 담배냄새에 대해 아이들의 간접흡연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원장이 담배냄새를 직접 겪은 것은 아니므로 제3자를 통해 사실확인을 거친 뒤 조심을 당부하는 것을 "뒷담화"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관계의 왜곡이자 허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앞에 있었던 전후관계는 생략한 채 자신에게 유리하게 내용을 각색하였다면 불법정보 유통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는 허위사실의 피해자가 해당 글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사례로 알아보는 Q&A

**Q** 최근에 우리반 원아 중 3명이 잇달아 그만두었습니다. 그 중 두 아이는 쌍둥이로 이사를 가면서 퇴소한 것이고, 한 아이는 대기를 걸어두었던 영어학원(영어유치원)에 자리가 나서 옮긴 것으로 원장이나 교사의 행위와는 무관한 퇴소였습니다. 그럼에도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의 원아 3명이 짧은 시간에 잇달아 퇴소하는 것이 눈에 띄어서인지 단지 인터넷 카페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교사)가 이 어린이집에 오기 전 담임선생님이 특정 보호자로 인해 많이 힘들어 하셨고 그로 인해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시간에 3명의 아이가 퇴소하니 이야기가 와전되어 제가 그 갈등의 주인공이고, 그로 인해 부모들이 아이를 퇴소시켰다고 합니다. 저는 입주민도 아니라 해명도 할 수 없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A** 원론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온라인에 글을 올린 사람을 상대로 형사고소 할 수는 있습니다만 헛소문은 누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경우보다는 “카더라” 또는 “아닐까?”가 결합되어 자극적인 이야기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최초 발언자를 특정하기 어려워서 고소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이런 헛소문에 대해 문제의식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1항에 따라 해당 단지 인터넷 카페운영자에게 사실관계를 정리한 내용을 보내 공지 및 더 이상의 명예훼손적 발언을 삼가주실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근거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침해를 받은 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 무단촬영·녹음·배포행위

### 무단촬영·녹음·배포행위란?

보육활동 중인 보육교직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 무단촬영·녹음·배포행위 예시

보육활동 중인 교사 모르게 녹음기를 이용하여 교사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무단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다운받을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는 경우

### 무단촬영·녹음·배포행위 현장사례

- 교사 모르게 녹음기를 이용하여 보육교사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 보육활동 중인 교사의 영상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이를 단체 채팅방 또는 맘카페에 게시하는 경우

### 무단촬영·녹음·배포행위 관련 규정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 사례로 알아보는 Q&A

**Q**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어린이집이라 바깥놀이나 산책을 하면 각 세대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을 알지만, 지금까지는 교사들이 큰 부담 없이 아이들과 즐겁게 생활해 왔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운영위원회 학부모를 통해 학부모 중 1인이 바깥놀이 중 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여 맘카페에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교사가 잠시 편의점에서 약을 사온 장면, 아이 하나가 무리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장면에 대해서는 교사를 비방하는 댓글이 많이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A** 전후맥락을 알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도 특정 시점의 사진과 함께 게시되면 얼마든지 여론을 조종할 수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타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모든 스마트폰은 촬영음이 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법은 모든 무단 촬영을 처벌하지 않고 그 결과물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결국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사진이 아니라면 그 촬영행위를 직접 고소하여 처벌할 수는 없고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따라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얼마 전 교사가 출근해서 보니 아이 이마에 붉은 자국이 보여서 보호자에게 연락하였습니다. 해당 원아는 맞벌이 가정 아이라 오전 7시 30분에 등원하여 9시까지 통합보육을 합니다. 그래서 제(원장)가 9시에 출근해서 발견한 붉은 자국이 집에서 생긴 것인지 통합보육시간에 생긴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보호자는 원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며 CCTV 열람을 요구하였고, 날짜를 정하여 열람하였습니다. 원에서는 보호자를 믿고 혼자서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처했는데, 그 보호자는 CCTV 영상을 앞뒤로 긴 시간을 재생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재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몇몇 학부모들과 공유하여 보육실의 다른 아이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A** 학부모는 어린이집에서 피해가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이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열람과정에서 휴대폰으로 재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열람을 통해 의심 장면을 확실히 특정한 경우 그 후의 절차를 위해 그 장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원아를 제외한 다른 원아들과 교사는 모자이크 처리를 한 뒤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CCTV 열람 중 자신의 휴대폰으로 재촬영하는 것은 무단 촬영이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 것은 무단배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CCTV의 무단 배포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처벌대상입니다.





### 손괴 행위란?

어린이집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 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

### 손괴 예시

- 보호자가 고의로 책상, 창문, 놀이기구 등 어린이집 기물을 망가뜨리는 경우
- 어린이집 출석부, 교사의 보육일지 등 일부나 전부를 찢어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 교사가 작성한 컴퓨터 파일을 일부러 삭제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 손괴 현장사례

어린이집에서 자녀의 행동에 화가 난 부모가 교사와의 면담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책상과 의자를 파손하는 경우

### 손괴 관련 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 사례로 알아보는 Q&A

**Q** 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식물 키우기를 하며 원 앞에 해가 잘 드는 곳에 화분을 내어두었습니다. 주말을 보내고 출근해보니 어떤 이유인지 화분이 쓰러져서 흙이 쏟아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또 다른 화분에는 거의 다 익어가는 방울토마토와 딸기가 있어 아이들과 기다렸는데, 누군가가 모두 따서 먹었습니니다.

**A** 어린이집에서 관리하는 화분이 쓰러져서 흙이 쏟아지고 그 안에 심어둔 식물이 상한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3고정2). 방울토마토나 딸기 등을 따서 먹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원 입구를 계절에 맞게 꾸미고 아이들의 활동도 전시하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의 작품만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CCTV를 확인해보니 보호자 중 1인이 한 행동이였습니다. 아마도 학부모들간의 감정싸움이 아이작품을 훼손한 동기인 듯합니다. 재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이것이 거래되는 상품이거나 고가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작품이라도 이를 훼손한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작품을 훼손하지는 않고 곱게 떼어 집에 가져가거나 다른 곳에 몰래 치워둔 경우에도 재물손괴죄는 성립합니다.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7도18807). 그러므로 친구들 작품은 모두 전시가 되는데 특정 아이의 작품만 전시를 못하게 한 행위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및 성폭력범죄**

### 성희롱 및 성폭력범죄 행위란?

보육교직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강제추행, 강간, 공중 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등 행위

### 성희롱 및 성폭력범죄 예시

- 보호자가 교사에게 '자기야, 누나/오빠 사귀자 등' 성적인 농담을 한 경우
- 불쾌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여 성적인 굴욕감을 느끼고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교사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 접촉하거나 음란한 동영상, 사진, 내용 등을 교사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경우
- 단톡방에 공유된 교사의 불법촬영물을 보거나 소지만 한 경우

### 성희롱 및 성폭력범죄 현장사례

- 교사를 허락 없이 등 뒤에서 근접 촬영하거나, 앉은 자세나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확대하여 촬영해 단톡방에 공유하는 경우
- 교사의 얼굴이나 몸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두고 성적 언급이나 평가를 하는 경우
- 보호자가 교사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여 성적인 굴욕감을 느끼고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 성희롱 및 성폭력범죄 관련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 사례로 알아보는 Q&A

**Q** 원에 보호자와 함께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한 보호자가 아이의 사진을 찍는 척하며 교사를 집중적으로 촬영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짧은 치마 등 노출이 있는 옷은 아니었지만, 너무 꺼림칙합니다.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A** 원에서 행사를 하면 평소보다 활동성이 좋은 옷을 입게 되고 평소에 비해 동작이 커집니다. 이때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특히 의도적으로 교사를 촬영한 것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에 따라 옷을 모두 입고 있거나 뒷모습으로 타인은 누군지 알아볼 수 없더라도 그 자체로 성적 굴욕감을 주는 사진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교사가 지인들과 일상을 나누는 SNS에 DM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들을 꾸준히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러나 싶어 그 사람의 계정을 들어가 보니 저희 원에 다니는 아이의 보호자였습니다. 계정 차단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A**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라 SNS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말·사진 등을 전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예로 SNS을 통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DM)를 지속적으로 보냈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계정을 차단하였지만, 가해자가 트위터로 피해자의 아이디를 '멘션(@계정명)*'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게시글을 여러 차례 작성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의 특정 행위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5도986).

*특정 사용자의 아이디를 '@' 기호와 함께 작성하여 보내는 행위

## 반복적 민원제기 행위

### 반복적 민원제기 행위란?

보호자의 정당한 보육활동 참여를 넘어서 특혜 요구나 개인적 불만 표출을 위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보육교직원과 어린이집에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반복적 민원제기행위 예시

- 보호자가 개인적인 불만으로 어린이집이나 관할 관청, 국민신문고에 매일 반복적으로 동일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 보호자가 자녀에 대한 교사의 모든 지도·훈육 행위를 금하는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 반복적 민원제기행위 현장사례

- 보호자가 개인적인 불만으로 어린이집이나 관할 관청에 매일 반복적으로 동일한 민원을 제기하여 민원에 대응하느라 정상적인 보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민원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되었는데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관할 구청과 그 외 모든 기관에 민원을 넣는 경우
- 교실 밖으로 수차례 나가는 유아에 대하여 보호자는 '지금껏 아이를 자유롭게 키워왔다. 우리 아이는 지도하면 엇나가니 앞으로 선생님은 어떠한 지도도 하지 말라'고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

## 사례로 알아보는 Q&A

**Q** 보호자가 이미 '문제없음'으로 결론이 난 사안을 내용을 조금씩 수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A** 반복적인 민원이라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접수 자체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기관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이상 반복하면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한 뒤 그 이후의 접수분을 "종결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반복된 민원 자체로 심각하게 공무가 방해될 경우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1조의2(전자민원창구 등의 이용 제한)에 따라 전자민원 창구 이용을 제한하고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따라 고발도 가능합니다. 그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행정기관에서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에서 관련 기록을 시간 순서에 따라 잘 정리해두고 기관마다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보호자가 반복된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 관청에서 동일 사안이라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종결처리를 하자, 보호자는 종결처리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A** 원칙적으로 민원에 대한 종결처리에 대해서 "진정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법원을 통해서 다시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둔 절차입니다. 다만, 첫 민원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였고 그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들어 2회에 걸쳐 회신하였다면, 그후의 반복된 민원에 대한 종결처리는 민원처리법에 따른 적법한 행정행위이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부당업무 강요행위란?

보육교직원의 법적 의무나 직무범위가 아닌 일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부당업무 강요행위 예시

자기 자녀에 대해서 특별한 보호를 요구하거나 교사의 업무와 상관없는 무리한 업무를 요구하는 경우

### 부당업무 강요행위 현장사례

- 보호자가 어린이집 반 배정과 관련하여 특정한 원아를 빼고 원하는 아이들로만 구성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는 경우
- 보호자가 자녀의 취향에 맞는 급식 메뉴를 별도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 복도에서 장난을 치던 유아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고 어린이집안전공제회를 통한 급여가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교사에게 별도의 배상비를 요구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비, 사고로 인한 위자료, 자녀를 돌보느라 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경우

## 사례로 알아보는 Q&A

**Q** 보호자가 책에 아이 얼굴이 살짝 긁히는 경미한 상처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무조건 아이를 제대로 보지 않은 교사 탓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혼자 교구장을 짚고 일어섰다가 주저앉으며 다리를 접지르며 미세한 금이 가자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분개하며 통원 치료도 교사와 원장이 다니라고 요구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다른 아이를 물어서 전달드리니 이 역시 교사가 제대로 보지 않아서라며 몰아세웠습니다.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겪으니 자연히 교사는 보호자를 보면 경직되었는데, 보호자는 교사가 자신에게 웃지 않는다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교사는 해당 보호자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정신과 진료를 받는 상황입니다.

**A** 아이를 키우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자잘한 사고는 물론이고 아이가 다른 아이를 무는 것까지 교사 탓을 하면서 자신을 볼 때 미소를 짓지 않는다고 공식적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일로 보호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다 다친 경우라 하여도 사고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취한 뒤 병원 이송을 하는 것까지가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건강관리 및 응급조치)에 따른 원장의 의무입니다. 원장은 원의 전체적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인 점에서 그 후의 치료과정까지 원장이 통원시키는 것은 원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때 다른 일이 발생한다면 그 역시 원장의 과실이 됩니다. 첫 응급조치 이후 경과 관찰 및 드레싱 작업은 보호자의 주도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원장이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부당업무 강요행위에 해당합니다.



## 사례로 알아보는 Q&A

**Q** 교사가 잠시 교사실로 갈 때 영아가 따라 들어왔다가 교사실에 있는 가습기에 손을 접촉하여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교사는 즉시 흐르는 물로 아이의 손을 씻는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검지손가락이 붉은 상태로 하원 하였고 2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교사는 응급조치를 하느라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고 사고 장소가 교사실이라 CCTV가 없었으나 있었던 사실을 최대한 자세히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내용의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는 교사실에 CCTV가 없어 그 사고 경위를 믿을 수 없다며 그 후로 총 3회에 걸쳐 계속 사고경위서를 본인(보호자)이 지정한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여 다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며 거절 시 공론화 하겠다고 말합니다.

**A**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가 사고경위서를 작성할 의무는 있으나 그 내용을 보호자가 요구하는 대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고경위서를 자신들이 지정한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여 작성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공론화 하겠다는 말 자체로 구체적 해악을 고지한 것이므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고경위서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을 위해 사용하려는 것이므로 보호자가 지정한 단어가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라면 그 자체로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고경위서에 추가하길 요구하는 단어가 기존에 적시된 사실 관계에 관리책임 부실 등을 인정하는 내용 정도라면 교사실에 가습기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실 출입 시 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것은 사실이므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불이익은 크지 않습니다.

## 보육활동 부당간섭행위

### 보육활동 부당간섭행위란?

정당한 보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보육활동 부당간섭행위 예시

- 보호자가 자녀의 보육활동에 과도하게 간섭하며 교사의 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수정하도록 강요하여 정상적인 보육활동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 담임교사를 교체해야 할 만한 사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 보육활동 부당간섭행위 현장사례

- 자녀가 물놀이를 싫어한다며 보육활동에 계획된 물놀이와 수영장 현장학습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 글씨를 왜 안 가르쳐 주냐, 중국어도 배우게 해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하는 경우

## 사례로 알아보는 Q&A

**Q** 만2세 아이가 유독 감정적 교류가 어렵고 공격적인 행동을 자주 보입니다. 보호자의 성향을 알기에 아이의 발달 상담을 권유나 추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반 아이들 단체로 시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통해 관련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수료하면서 상담센터에서 아이들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에 따라 양육 시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하는지 레포트를 발행하여 주어 보호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공유하였더니, 그 아이의 보호자는 그 레포트가 자신의 아이를 부당하게 깎아내린다며 앞으로 해당 상담센터 프로그램은 진행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요구합니다.

**A** 아이의 성향이나 특징을 보호자보다 원이 더 객관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원아 중 상담센터 교육이 가장 절실한 아이의 보호자가 그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현실은 많이 안타깝습니다. 원에서 이뤄지는 보육활동의 책임자이자 전문가는 원장과 교사입니다. 보호자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는 있어도 보호자가 원에서 이루어지는 보육활동에 대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무엇을 할지 말지까지 영향을 주려하거나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공론화하겠다는 태도는 보육 활동에 대한 부당간섭행위에 해당합니다.

## 사례로 알아보는 Q&A

**Q** 보조교사가 아이들 하원 가방과 외투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 만5세반 아이 중 하나가 부모가 오기 전에 먼저 원 앞에 있는 놀이터에 나가 노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이는 평소 같은 시간에 하원 하는 다른 친구들이 부모를 만나 하원 후 놀이터에 있자 따라나선 것으로 약 5분 정도 놀다가 멀리서 자기 보호자 차가 다가오는 것이 보이자 찻길로 반가워서 나갔다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일 이후로 보호자는 즉시 담임교사의 교체 및 보조교사의 해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는 그날 보수교육 때문에 원에 없었고, 당시 하원은 보조교사가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막무가내로 담임교사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A** 원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는 아이들의 안전이며, 특히 하원 시에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5분 정도 아이의 보호에 공백이 생긴 것은 자칫 큰 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중대한 사안인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담임교사는 보수교육 일정으로 본 사고에 과실이나 책임이 없는 점에서 담임교사의 교체 요구는 부당한 간섭행위입니다. 원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보호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담임교사를 교체한다면 이는 담임교사에 대한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조교사의 경우도 담임교사의 공백을 채워 줄 다른 인력이 보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일로 실질적으로 아이에게 어떤 피해도 없음에도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는 원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 재발방지방안을 논의할 문제로 보이며, 교사의 교체나 해고는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행위**

###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행위란?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보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행위 예시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활동에 따라 필요한 생활지도를 하는데 이에 협조하지 않고 교사에게 폭언, 협박, 폭행 등을 하는 경우

###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행위 현장사례

- 생활지도의 일환으로 시행한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보호자가 해당 교사에게 폭언·항의·협박을 하는 경우
- 아이가 규칙을 지키지 않은 상황에 대해 지도했는데, 이를 '교사가 아이를 괴롭힌다'는 식으로 왜곡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 사례로 알아보는 Q&A

**Q** 장애통합반 아이로 희귀 질병을 가지고 있어 의사로부터 살이 찌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권고를 들었고 부모가 교사들에게도 알렸습니다. 원에 생일잔치가 있던 날 아이는 밥은 먹지 않고 케이크만 먹겠다고 하여서 교사는 아이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기 위해 '밥은 먹지 않고 케이크만 먹으면 OOO이가 좋아하는 예쁜 옷을 입을 수 없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보호자는 이를 아동학대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며 사과하지 않으면 입주민 카페에 글을 올리고, 1인 시위를 하고 현수막을 걸겠다고 협박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전화로 말하며 매우 공격적인 언어로 표현합니다.

**A** 희귀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라도 점심 식사를 제대로 한 후에 케이크를 먹도록 지도하는 것은 매우 정당한 생활지도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해당 원아는 희귀 질병으로 인해 더욱 케이크와 같은 음식은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바, 어떤 설명으로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아동학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학부모의 공격적 발언 자체는 협박죄에 해당하고 현수막이나 입주민 카페에 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는 것은 명예훼손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의 내용 및 전후 상황을 제3자가 보기에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녹음 및 관련 자료 정리를 통해 향후 일어날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례로 알아보는 Q&A

**Q** 등원한 아이의 이마가 뜨거워서 체온을 측정한 결과, 38도 이상의 발열을 확인하였습니다. 교사는 바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며 아침에 해열제를 복용하였는지, 병원을 방문한 적은 있는지 등 어린이집에서 처치를 하기전에 필요한 내용을 정중히 물어봤습니다. 보호자는 교사의 전화가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며, 집에서 열이 난 적도 없는데 왜 어린이집에만 가면 열이 나는지 알 수 없다고 화를 냈습니다. 원장은 원에서 보여지는 아이의 건강 관련하여 즉시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교사의 의무라고 말하니, 그런 보고지침이 어딨냐며 왜 마음대로 그런 지침을 만들었냐며 항의합니다.

**A** 어린이집은 한 명의 교사가 여러 아이를 돌보는 곳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는 아이의 사고 또는 감염 우려 있는 질병을 발견하는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및 병원에 이송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아이 체온이 38도를 넘어설 때 해당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해당 아이의 건강을 챙기는 행위이자 혹시 모를 다른 아이들에 대한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로 다수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생활지도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열을 겪는 아이는 원에서 보육 활동을 수행하기보다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조치입니다. 이에 대해 항의하는 행동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방해이므로 다수가 함께 생활하는 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통해 규정을 재확인하며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전체 학부모에게 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방안

| 단계 | 내용 |
|---|---|
| 1단계 | 보육활동 침해 발생 인지 |
| 2단계 | 보육활동 침해 여부 점검 |
| 3단계 | 원장에게 보고 및 공식 기록 |
| 4단계 | 사실관계 고지 및 즉시 침해 중단 요청 |
| 5단계 |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여부 검토 |
| 6단계 |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 |
| 7단계 | 조치 이행 여부 모니터링 및 추가 대응 |
| 8단계 | 외부기관 연계 및 교직원 지원 |

### 1단계 보육활동 침해 발생 인지

- 보호자가 온라인·SNS에 교직원의 실명을 언급하며 사실과 다른 글이나 비방성 내용을 게시한 경우
- 대면·전화·메신저에서 폭언·협박·모욕 등으로 보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등

⋯› 즉시 보육활동 침해로 인지하고 기록을 시작한다.

### 2단계 보육활동 침해 여부 점검

-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른 주장, 과도한 비난, 허위정보·개인정보 노출 등 침해 유형에 해당하는지 체크
- 동일·유사 행동의 반복 여부, 다른 교직원의 피해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 심각성 평가

### 3단계 원장에게 보고 및 공식 기록

- 교직원은 구두 + 서면 보고 병행(게시물 캡처, 대화 내용, 발생 시간·경위 등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함께 제출)
- 원장은 △보육활동 침해 여부 △교직원 보호 필요성 △동일·유사 사례 반복 여부 △기관 차원의 조치 필요성 등을 검토해 후속 절차 결정

### 4단계 사실관계 고지 및 즉시 침해 중단 요청

- 보호자에게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리고, 보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므로 즉시 중단해 줄 것을 요청
- “현재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보육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즉시 중단을 요청드립니다. 중단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 검토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라고 고지하며 중단 요청
- 전화·대면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취지를 문자·메신저로 남기고, 이후 절차 진행을 위해 기록 보관

### 5단계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여부 검토

- 즉시 조정·설명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이거나 신속·직접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면 생략 가능 △피해 교직원이 공식적인 문제 제기 또는 기관 개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사안이 향후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어린이집 영유아들의 안전 및 보육환경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기관의 공식적·중립적인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 필요

### 6단계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

- 피해 교직원의 진술서를 제출받아 침해 경위, 기관의 1차 대응, 보호자 주장, 피해 교직원 요구, 재발 가능성 등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사실관계와 관련 지침을 바탕으로 ‘사과 요청, 게시글 삭제 요청, 면담 방식 제한, 외부기관 연계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의결
- 결정 사항은 서면으로 정리하여 기관 공식 입장으로 확정

7단계

### 조치 이행 여부 모니터링 및 추가 대응

- 원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사항(보호자 안내, 면담, 서면 경고, 출입 제한 요청 등)이 적절히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
- 보호자의 게시글 삭제·사과 등 합의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
- 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침해가 반복될 경우, 피해 교직원의 의사를 반영해 법률 자문 후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 관계기관 신고 등 단계적 조치를 검토

8단계

### 외부기관 연계 및 교직원 지원

- 필요 시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인권센터, 경찰·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하여 전문 상담·법률 지원 제공
- 피해 교직원에게는 심리상담, 휴식·근무조정, 동료 지지체계(멘토링) 마련 등 회복을 위한 지원 제공
- 동일·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전 교직원 대상 권리보호교육을 실시

# 4 반복적 민원 제기 행위 시 대응방안

| 단계 | 내용 |
|---|---|
| 1단계 | 반복 민원 인지 |
| 2단계 | 최초 민원에 대한 충실한 처리 |
| 3단계 | 반복 민원 판단 및 통지 |
| 4단계 | 응대 방식·범위 제한 |
| 5단계 | 운영위원회 자문·심의 활용 |
| 6단계 | 외부기관·법률지원 연계 |

1단계

### 반복 민원 인지

- 동일 보호자가 같은 내용을 여러 경로(전화·문자·SNS·민원게시판 등)로 반복 제기하거나, 이미 답변·조치한 사안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반복 민원으로 분류
- 민원 접수 대장, 상담 기록, 교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반복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

※ 교육부는 동일·유사 민원 3회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반복 민원으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음

2단계

### 최초 민원에 대한 충실한 처리

- 초기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조사하고 관계 법령·지침·기관 규정 등을 근거로 성실히 답변
- 면담 내용, 설명 내용, 보호자의 동의 여부 등을 상세히 기록해 이후 판단의 기준자료로 활용

3단계

### 반복 민원 판단 및 통지

- 동일·유사 민원이 다시 제기되면 "○○일자에 동일 사안에 대한 조사·조치·답변이 완료되었으며, 추가 사실 변화가 없는 경우 재조사 또는 답변이 어려움" 취지로 서면 안내
- 반복 민원 판단 근거(기존 자료·면담 기록·기관 규정)를 함께 설명하여 오해 방지

4단계

### 응대 방식·범위 제한

- 반복 민원으로 교직원의 정신적·신체적 소진 또는 보육활동에 지장이 발생하면 전화·대면 응대 시간·횟수를 제한하고, 이후에는 서면·이메일 등 공식 채널로 응대
- 인격 모독, 고성·욕설, 협박, 허위 주장 등이 동반되는 경우 악의적·집요한 반복 민원은 형법상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함을 안내
- 반복적 모욕·명예훼손성 표현은 경찰 신고가 가능함을 안내

5단계

### 운영위원회 자문·심의 활용

- 반복 민원이 장기화되거나 다른 영유아들의 기본권, 기관 운영에 영향을 주는 경우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 운영위원회는 민원 내용의 타당성, 기존 조치의 적절성, 추가 안내·교육, 규정 정비 등을 심의
- 결정사항은 보호자에게 서면 안내

6단계

### 외부기관·법률지원 연계

- 반복 민원 과정에서 교직원에 대한 모욕·협박 명예훼손성 게시물 게시 등 과도한 정서적·업무적 압박 등이 발생하면 증거(녹취·캡처·문자 등) 확보 후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지자체, 권익위, 인권위, 경찰, 법률구조공단 등과 상담·신고
- 외부기관 자문 결과는 운영위원회 및 교직원과 공유해 향후 대응 기준 강화



# 5 아동학대 신고 시 대응방안

**핵심 원칙**

- 정당한 생활지도·훈육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음
-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반드시 사실확인 절차를 진행
- 허위·과장 신고는 교사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은 즉시 보호조치 필요

| 단계 | 내용 |
|---|---|
| 1단계 | 사실확인·기록 |
| 2단계 | 원장 보고 및 침해행위 판단 |
| 3단계 | 보호자에게 사실관계 안내 |
| 4단계 | 수사기관 대응 준비 |
| 5단계 | 아동학대 혐의 없음 결론 후 후속조치 |

1단계

### 사실확인·기록

- 보호자의 주장 및 신고 내용을 문서로 확보
- 사건 당시 교직원의 진술·보육일지·연락일지·CCTV 촬영 범위 및 시간대를 모두 수집
- 교직원이 별도 진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초기 사실기록의 정확성은 '진술 일관성' 검증에서 핵심 요소가 되어 혐의없음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

2단계

### 원장 보고 및 침해행위 판단

- 보호자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과장인지, 또는 오해 가능성이 있는지 우선 검토
- 경찰 지침서 기준에 따라 판단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이 있었는지 △위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지△1회적 정당행위인지△정당한 생활지도 범위에 해당하는지, '정당행위 여부'와 '과도한 방법 사용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판단함

3단계

## 보호자에게 사실관계 안내

- CCTV, 교직원의 진술, 목격자 교직원, 보육일지 등 객관 자료를 근거로 사실관계 설명
- 보호자의 우려가 사실과 다르게 해석된 부분이 있음을 안내
- 불필요한 감정적 대립을 피하고, 오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명
- '고의성 부재·학대 목적 부재'를 객관 자료로 설명하는 것은 향후 진술 신빙성 확보에 매우 중요함

4단계

## 수사기관 대응 준비

(1) 교직원의 진술 준비

시간대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 아동의 안전 보호 목적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기술, 경찰 지침서 판단 요소 반영 △목적(안전 확보 목적) △정도(필요 최소 범위) △횟수(반복적이지 않음) △정당성(생활지도 범위 내 행동) △감정적·흥분 상태가 아니었음을 설명

(2) 증거자료 제출

CCTV 영상, 보육일지, 행동관찰기록, 안전연락일지, 동료 교직원 등의 목격진술, 아동의 신체 상태 확인자료(상처 여부·즉시 일상 복귀 등)

5단계

## 아동학대 혐의 없음 결론 후 후속조치

- 보호자에게 공식 서면으로 결과 안내
- 반복 신고·허위 신고 정황 시 명예훼손·허위신고죄 등 가능성 안내
- 교직원의 심리 안정 및 직무 복귀를 위한 보호조치 마련
- 기관 내부 재발 방지 대책 정비

출처 : 경찰청(2024).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가이드라인.

## 사례로 알아보는 Q&A

**Q** 어린이집 원아가 교실로 들어가자는 교사의 말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아 교사가 원아의 팔을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팔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알고보니 해당 원아는 기존에도 팔이 자주 빠진 경험이 있는 아이여서 팔을 잡아당겨서는 안 되었는데, 교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는 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는 물론이고 상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A** 아이의 팔이 빠진 것도 상해의 결과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형법에 있는 대부분의 죄는 행위자가 고의로 했을 때만 문제됩니다. 교사는 아이를 교실에 데리고 가려고 팔을 잡은 것으로 이는 보육 활동 중에 일반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이며 일반적인 경우 팔이 빠지는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해당 교사에게 자녀가 팔이 자주 빠지는 아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린 사실이 있거나 충분히 알만한 상황이었다면 상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생활을 통해 아이들은 단체생활에서 규율의 중요성을 배우기도 합니다. 단체생활을 하면서 다른 아이들은 교실로 모두 들어갔는데, 아이가 교실로 들어가기를 거부한다고 하여 그냥 둔다면 교사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생활지도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원아의 팔을 잡아서 교실로 들어가도록 한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말하기는 어려워도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 내의 행동이므로 아동학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아의 팔이 빠진 일과 관련하여, 선생님이 아이의 팔이 쉽게 빠지는 상태임을 알고도 무리한 행동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해죄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사례로 알아보는 Q&A

**Q** 원장인데 제 자녀가 중대한 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 유급 휴가를 내고 약 한 달간 자녀 간병을 위해 원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복귀하자 마자 보호자 한 분으로부터 교사가 아이가 울 때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아이가 그 선생님이 무서워서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한다고 알려왔습니다. 평소 신뢰하는 교사라 너무 놀랐지만, 사실확인을 위해 CCTV를 확인해 보니 교사가 다른 아이에게 그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해당 아이 보호자에게 혹시 아이에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니, 쌍둥이 아이 중 말을 잘하는 아이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해 줘서 부인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울 때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A** 아동학대의 법률적 정의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가혹행위도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주로 훈육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는다고 아이의 신체에 상처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이 내 입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으면 매우 불쾌한 것은 분명하므로 이는 신체적 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그 일로 타인을 신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점에서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 내용처럼 보호자의 제보가 있었고, CCTV를 통해 유사한 행동이 확인되었으며, 아이의 진술도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상황이라면 단순 훈육이나 영유아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으로 보기 어려워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아동학대 해당 여부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아이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 6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역할

보육활동 보호는 어린이집 구성원 모두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보육교직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존중받고 부모와의 상호 신뢰가 형성될 때 영유아는 더욱 안정된 보육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보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원장, 보육교사, 부모가 함께 실천해야 할 주요 역할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장의 역할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방**

1. 보육교사가 전문성과 자율성에 기반하여 보육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신뢰하고 지원한다.
2. 어린이집 운영 전반과 놀이중심 보육과정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안내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3. 보육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보육활동과 권리보호를 위한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4. 어린이집 내 보육활동 보호 관련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고, 모든 구성원이 숙지하도록 안내한다.
5.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부모가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배려하도록 정기적인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6. 영유아 및 보호자와 교사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행정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 교사의 역할

###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방

1. 보육전문가로서 책무를 다하며, 놀이중심 보육과정에 기반한 보육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2. 부모와 해당 반의 보육과정에 대해 공유하고, 보육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3. 영유아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이해하고, 자녀의 발달 상황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가정의 이해 도움을 지원한다.
4. 부모의 감정과 입장을 존중하고, 의견을 경청하며 감정적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공감적인 태도로 소통하여 신뢰를 유지한다.

### 보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역할

1. 부당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받는 경우, 침착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응하고, 해당 상황이 보육활동 침해에 해당됨을 명확히 알린다.
2. 침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문서화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필요시, 관련 법과 기관의 공식적인 보호 및 지원을 요청한다.

### 보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역할

1. 보육활동 침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방관하거나 회피해서는 안되며, 관리 책임자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뒤, 보육교사의 입장을 존중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이행한다.
3. 침해 상황이 반복되거나 원만한 조정이 어려울 경우, 운영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4. 침해 상황 처리 과정에서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심리상담 지원 등의 보호조치를 제공한다.
5. 사건 처리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자, 보육교사 모두에게 관련 규정과 올바른 상호작용 방법을 안내한다.

## 부모의 역할

###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방

1. 어린이집의 보육철학과 놀이중심 보육과정을 이해하고, 보육전문가로서 원장과 보육교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2. 자녀의 발달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협력하며, 가정에서도 일관성 있는 양육 및 지도를 한다.
3. 가정통신문, 알림장, 면담, 부모 참여 활동 등을 통해 어린이집과 소통하며 보육교사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한다.
4. 보육교사의 업무시간과 사생활을 존중하며, 비상 상황이 아닌 경우 연락을 자제한다.
5. 자녀 양육의 1차 책임자로서 부모의 역할을 성실히 하며 어린이집을 신뢰하고 보육교직원과의 협력을 통해 자녀 발달을 함께 책임진다.
6.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하며, 보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한다.

### 보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역할

1. 자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다.
2. 갈등이 발생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원장 또는 해당 보육교사와 약속을 정한 뒤 방문하여 대화한다.
3. 자신의 과도한 간섭이나 부당한 요구가 보육활동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보육교직원이 해당 행위가 보육활동 침해에 해당함을 안내하고 중단을 요청할 경우, 즉시 행위를 중지하고 원장 등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성실히 임한다.
5. 사이버 공간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보육교직원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교사와의 갈등이 확대될 우려가 있거나, 어린이집에 요청이 있을 때는 원장 또는 공식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7. 문제 해결 이후에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린이집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한다.

출처 : 교육부·한국보육진흥원(2025).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 가이드라인.

# 부록

## 보육교직원 권리 관련 법령

1.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2.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보육교직원 권리보호와 영유아 생활지도**

존중받는 보육, 보호받는 교사

# 부록. 보육교직원 권리 관련 법령

## 1.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　정> 2025. 6. 22. 교육부고시 제 2025호-16호

<시　행> 2025. 6. 22. 교육부고시 제 2025호-1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에 따른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에게 부여한 영유아 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민원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동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조교사” 및 같은 법 제17조제4항에서의 “대체교사”로 한다.
3. “취약보육 영유아”란 만 3세 미만의 영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등을 말한다.
4. “영유아 생활지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보육 활동 과정에서 영유아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가. “조언”이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나. “상담”이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 또는 보호자와 소통하여 영유아의 문제행동을 해결하고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모든 의사소통 활동을 말한다.

   다. “주의”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 또는 보호자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라. “훈육 · 훈계”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영유아의 행동을 중재하거나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마. “보상”이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 · 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3조(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및 보호자, 영유아의 책무)

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보호자, 영유아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생활지도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다른 영유아의 보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 및 보호자와 교사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행정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④ 영유아와 보호자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⑤ 보호자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를 존중하여 보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4조(생활지도의 범위)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1.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영유아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정당한 보육 활동과 다른 영유아의 보육을 받을 권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어린이집의 반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 · 사용
5.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6. 언어 사용, 비언어적 상호작용 등 모든 의사소통 행위
7. 영유아 간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8. 취약보육 영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9. 그 밖에 생활지도에 관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5조(조언)

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영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영유아의 사생활에 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에게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의 검사 · 상담 · 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상담)

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보호자 또는 영유아는 영유아의 문제를 해결이나 추가 지원을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보육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 내용은 해당 영유아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및 대상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보호자 등의 폭언 ·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른 보육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주의)

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의 행동이 어린이집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영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반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영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주의를 주었음에도 영유아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영유아의 행동으로 보육 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8조에 따른 훈육 ·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가 주의를 주었음에도 영유아가 이를 무시하여 인적 ·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장과 보육교사는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8조(훈육 · 훈계)

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제5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7조에 따른 주의로 영유아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 · 훈계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가 법령에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영유아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른 보육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사는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영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다른 법령에 따라 영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교사가 반 분위기를 저해할 것으로 판단하는 물품
4. 그 밖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⑥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른 영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영유아에게 질병이 생기거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귀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상)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4장 그 밖에 사항**

제10조(취약보육 영유아의 생활지도)

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만 3세 미만의 영아,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이하 '장애아'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지도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원장(이하 '취약보육 어린이집 원장'이라 한다.) 은 취약보육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취약보육 관련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취약보육 어린이집 원장은 취약보육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을 편성하고, 취약보육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와 다른 보육교직원이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경우 보호자와 상호 협의하여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보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제18조의3에 따라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제기)

① 보호자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13조(세부사항)

어린이집 원장은 그 밖에 영유아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025-16호, 2025. 6. 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　정> 2021. 8. 10. 조례 제 7157호

<일부개정> 2024. 7. 18. 조례 제 741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7.18.>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 ·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5.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경기도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권익침해 예방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대한 정책방향과 목표
2.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 및 근로보장, 교육훈련 등 분야별 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
4. 보육교직원의 권익개선 관련 조사 · 연구 및 교육훈련 실시계획
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육교직원의 고용안정)

① 도지사는 경기도내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채용시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이 있는지 적극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의 근로계약은 가능한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사업)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2. 보육교직원의 심리검사 및 진단, 치유 프로그램 제공
3. 보육교직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4. 보육교직원에 대한 갑질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6.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증진
7. 그 밖에 도지사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고충처리 및 분쟁조정을 전담할 수 있는 경기도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근로조건, 처우 등에 대한 노무 상담
2. 보육교직원의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소송 지원
3.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또는 보육교직원 상호 간의 분쟁조정 및 중재
4.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관리 [신설 2024.7.18.]
5.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보호조치 [신설 2024.7.18.]
6. 그 밖에 도지사가 보육교직원의 고충처리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4.7.18.> ]

③ 전담기구의 설치 ·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전담기구의 업무처리 실태 및 개선방안
5.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기준 마련 및 보호조치 [신설 2024.7.18.]
6.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신설 2024.7.18.]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4.7.18.>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보육전문가
3. 어린이집 원장의 대표
4. 보육교사 대표
5. 학부모 대표
6. 경기도 보육 담당 부서의 국장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 관리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1년에 2회 개최하되, 그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주요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4조(준용)

위원회의 설치 ·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1.8.10., 2022.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99] 생략

[100]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01] ~ [255] 생략

부 칙 <2024.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관련 영상 QR 안내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고충처리창구운영사업」홍보 영상

보육교직원 인식개선 영상

보육교직원 인사·노무 영상

영유아 생활지도 영상

보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영상

보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및 예방 영상

## 참고문헌


- 경기도여성가족재단(2025).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현황 및 개선방안.
-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2024). 사례로 알아보는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가이드.
-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2025). 노무사와 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 경찰청(2024).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가이드라인.
- 교육부(2025).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2025~2029년).
- 교육부·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 문제연구소(2024). 2024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 교육부·한국보육진흥원(2025). 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 상담 사례집.
- 교육부·한국보육진흥원(2025). 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 가이드라인.
- 교육부·한국보육진흥원(2025).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6).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 육아정책연구소(2024). 보육교사의 권리보호 실태와 향후 과제.

**총　괄**　홍원자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편　집**　김효진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팀장
신혜민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감　수**　문나연 변호사(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임이랑 변호사(법률사무소 이랑)

**보육교직원 권리보호와 영유아 생활지도**
: 존중받는 보육, 보호받는 교사

---

**인　쇄**　2026년 6월 인쇄

**발 행 처**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16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5층
전화 (031)258-1485　|　팩스 (031)258-1434

**인 쇄 처**　(주)혜성디자인

※ 이 책은 판매용이 아니며, 저작권 및 판권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습니다.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 보육교직원 권리보호와
# 영유아 생활지도

존중받는 보육, 보호받는 교사